디지털 성범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방법,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1
1.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
1.1.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4
1.1.1.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4
1.1.2.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6
1.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8
1.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8
1.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10
2.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13
2.1.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13
2.1.1. 불법 도용 13
2.1.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14
2.1.3.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15
3. 온라인 내 성적 침해 18
3.1.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18
3.1.1.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18
3.1.2. 온라인 그루밍 20
3.1.3. 몸캠피싱 23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26
4.1.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26
4.1.1. 신고, 상담 및 대응 방법 26
4.1.2.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27
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0
4.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30
4.2.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4

1.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1.1.1.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하 “불법촬영”이라 함)하는 행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따라서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금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 **Q1. 저장하지 않고 촬영만 한 것도 처벌받나요?**
>
> A1. 네,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만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1면).
>
> **Q2.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2.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를 겪은 경우 문자로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을

문자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1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반포’와 ‘제공’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상습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1.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제목, 키워드 등을 확보하여 추가 피해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피해영상물이 확보되어야 피해지원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영상물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26면 참조).

Q2.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영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영상이 어딘가 유포되었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유포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지,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촬영물을 타인에게 송신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피해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 있다면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0면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Q. 전 여자친구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SNS에 게시된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2호, 제70조 및 제74조제1항제2호).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민법상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게시된 영상의 삭제 또는 차단을 위해 해당 SNS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Q.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디클 홈페이지(https://dicle.kigepe.or.kr)-디지털성범죄란? 참조].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용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금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그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 SNS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제 사진을 친구(지인)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협박에 대한 증거(피해촬영물, 문자 및 대화 캡처본,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1면 참조).

※ **「형법」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

Q1. 나체사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처벌할 수 있나요?

A1. 실제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만약, 있지도 않은 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이 경우에도 실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강요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1.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호 및 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제7항).
-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의미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의미(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됩니다. 여기서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다른 웹사이트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연결을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것이라면,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배포´나 ´공연히 전시´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그 대화방에 게시하여 다수 회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즉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다는 것은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리 목적만으로는 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영리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판매·배포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의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호 및 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한편 인터넷 주소(URL)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0. 6. 2.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위 협박·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협박·강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협박·강요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283조 또는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85조 및 제286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Q.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A. 협박은 상대에게 무섭게 말하거나 행동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무서워하면 자신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가장 겁나는 말로 위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대화로 상대를 설득해 보려고 하거나,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무서운 마음이 들겠지만, 가해자의 협박이 시작되면 즉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1.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 가해자들은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협박 수위를 높여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2. 크게 심호흡하세요.

- 협박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먼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가볍게 토닥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후, 아래에 안내된 방법들을 차분히 하나씩 따라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3. 가해자의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서 대화방을 나와야 한다면, 나오기 전에 메시지 내용을 날짜와 시간까지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대화방에서 나가고 가해자를 차단하세요.

4. 가해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하세요.

- 가해자의 메시지는 대부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말들로 가득해서,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이에 협박 메시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바로 차단하는 것이에요. 메시지 알림을 끄거나, 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5. 가해자에게 알려준 개인정보는 변경하거나 탈퇴하세요.

- 가해자에게 알려준 SNS 계정, 아이디 등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탈퇴해서 다시 연락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6. 협박하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경찰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들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과정을 통해,

√ 가해자의 협박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대응 방법 살펴보기-온라인 그루밍 참조>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2.1.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2.1.1. 불법 도용

불법 도용의 이해

불법 도용의 금지

▪ “불법 도용”이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 **Q. 제 SNS에 올렸던 일상 사진이 성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성적인 모욕 댓글과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피해지원기관(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4면 참조).

불법 도용 관련 처벌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금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 ※ **시각적 수단(사진 도용·합성 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
>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금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스토킹행위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제2호 참조 및 제18조제1항).

2.1.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

"허위영상물 등"이란?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Q.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되어 다른 SNS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피해영상물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등을 확보하고 피해지원기관(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3면 참조).

허위영상물 등 제작 금지

▪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 **Q.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 음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
>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또는 유포 한 경우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1.3.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금지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허위영상물 등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관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 “허위영상물 등”이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1. 학교 동창생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의 지인 능욕방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이런 방에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사진을 저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A1. 네.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시청 및 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Q2. 메신저에서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시청만 했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2. 네.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허위영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금지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및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나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반드시 그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른 협박·강요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283조 또는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85조 및 제286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3. 온라인 내 성적 침해

3.1.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3.1.1.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의 이해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격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9면).

> **Q. 제가 하는 게임 이용자 게시판에 제 개인정보와 함께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댓글이 자꾸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중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이나 비공개 채팅방에서 촬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플랫폼에 추가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신고를 한 뒤 필요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5면).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관련 처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금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 •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공공연한 전시´의 의미**(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토렌트 파일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지칭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적인 비하 발언을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인격을 비하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1.2.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의 이해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길들이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의 특징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대응 방법 살펴보기-온라인 그루밍 참조>

Q. 고민도 들어주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가해자가 맞을까요?

A. 가해자는 평범하게 다가오고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만으로 범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1. 가해자들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요.

•가해자들은 친밀하게 접근한 후,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요(비밀 친구, 연인 관계 등). 이에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가해자는 음료 쿠폰,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용돈 등을 선물하는데, 이런 선물을 이용해 추후 성적인 요구를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마음(미안함, 죄책감 등)을 느끼게 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물을 보내게끔 만들어요.

• 가해자들은 성적인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대화 내용, 사진, 비밀 등을 친구나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두렵고 무섭게 만들어요.

2. 가해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해요.

• 가해자들은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이름, 학교,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말하게끔 만들어요.

•가해자들은 호감을 보이며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성적 대화 및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해요.

•가해자들은 일상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처음엔 소소한 사진을 주고받다가 점차 수위를 높여서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끔 만들어요.

3. 꼭, 기억하세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및 성적 영상물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대응 방법 살펴보기-온라인 그루밍 참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조제1호·제4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Q.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채팅으로 고민 상담을 하며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손 사진, 그 다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 줬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 높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를 인지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영상물(사진, 영상, 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혹은 주변인이 불안한 마음에, 혹은 피해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수사와 피해영상물의 삭제, 모니터링에 필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 혹은 피해지원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40~41면 참조).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적 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3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제작, 배포, 시청 등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유포 협박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위 협박·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협박·강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몸캠피싱

몸캠피싱

"몸캠피싱"이란?

▪ "몸캠피싱"이란 온라인 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촬영되었거나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Q.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이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후 화상 채팅을 했는데 제 몸이 찍힌 녹화 영상을 보내주며 제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다고 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물어보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름, 회사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증거와 범인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감염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관련 사진, 메시지 등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추가로 빼앗기는 사례가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 후 보존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8면 참조).

※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필요한 사항

- 가해자에 의해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삭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대화나 캡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므로, 신고할 의향이 있다면 증거가 될 만한 파일들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 경위 / 사용된 채팅 등 사이트 또는 어플, 메신저 종류

② 공격자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 파일명칭(xxxx.apk) 등

③ 구체적 협박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

④ 송금 시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송금 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

⑤ 동영상 유포 여부(유포 시 유포시점,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⑥ 유포된 동영상 원본 또는 캡처 자료

⑦ 채팅 내용(대화기록):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8~39면 참조>

몸캠피싱 관련 처벌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의 금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상습으로 불법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의 금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형법상 공갈죄

▪ 몸캠피싱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 ※ 그 밖에 몸캠피싱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발생한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도용 및 불법합성(딥페이크)-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불법 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4.1.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4.1.1. 신고, 상담 및 대응 방법

신고 및 상담

피해 신고·상담 전문기관

구 분	내 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홈페이지: https://report.kocsc.or.kr/ • 상담전화: ☎ 1377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 상담전화: ☎ 02-735-8994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홈페이지: https://women1366.kr/ • 상담전화: ☎ 1366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 상담전화: ☎ 112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바로가기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바로가기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신고 및 상담, 고소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자 등 대응 방법

1. 피해 당사자

① 피해 사실에 대해 절대 자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지의 여부, 수사기관에 신고할 지의 여부 모두 본인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해결해나가기 어려울 경우 주변 혹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성적 영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해당 영상물(사진·영상·음성 등),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해당 자료를 지우는 경우 피해 지원(삭제 및 모니터링)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 성범죄 증거 자료를 전자기기에서 삭제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고소 및 진정 접수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⑥ 개인정보가 유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및 조력자

①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와 상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18면 참조>

4.1.2.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 요청

삭제 대상 및 삭제지원요청자

▪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함),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전단 및 제1항 참조).

※ "불법촬영물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②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신상정보”란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삭제지원 내용

▪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지원 요청 방법

▪ 삭제지원요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단체를 포함)에게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3항).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직권 삭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전단).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후단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전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후단).

※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등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5항 전단).

그 밖에 피해정보 삭제 등 조치

피해확대 방지 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등 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제2조제14호가목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에 따른 기관·단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참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요청기관: 바로가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접속 차단을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 또는 대표 전화(☎ 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 접속 차단은 국내 IP를 통한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VPN 등으로 IP를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8면 참조).

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4.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참조).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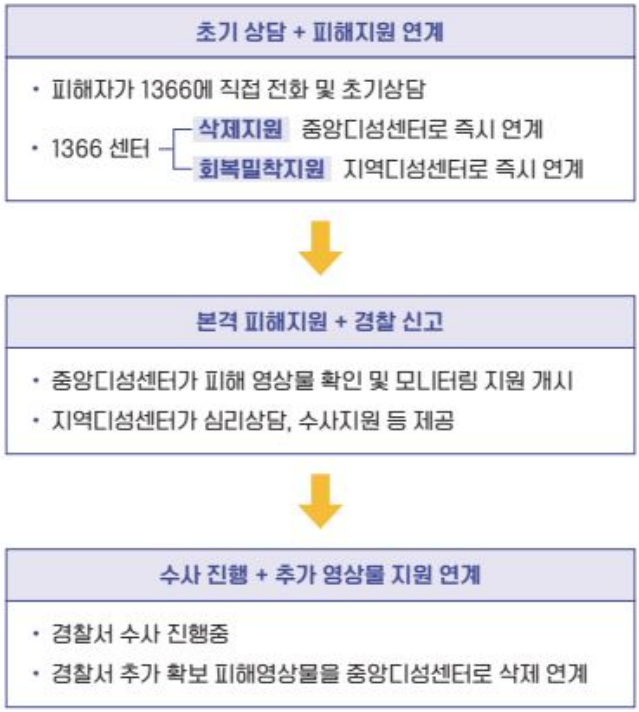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58면>

지원 내용

※ 원스톱(one-stop) 지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51면>

Q1. 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A1.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2.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참조>

상담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면).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1366 (중앙센터 직통: 02-735-8994)

• 온라인 상담: 디지털성범죄STOP 홈페이지(https://d4u.stop.or.kr)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4면).

※ 삭제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

종 류	예 시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 제작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 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②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무단으로 녹화·캡처된 자위행위 촬영물
③ 합성·편집물 • 합성·편집물·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④ 비동의 유포물 •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 부위 촬영물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 성행위 촬영물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삭제지원 안내 참조>

※ 삭제지원 흐름도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삭제지원 안내 참조>

Q. 삭제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참조>

연계 지원

▪ 센터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다음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지원 내용 참조].

-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지원
- 의료지원 및 심리 치료지원 연계
- 무료 법률지원 연계

4.2.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신분비공개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신분위장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다음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7).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일시적 보호시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제45조 및 제46조).

- 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 보호법」 제35조)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심리 지원

▪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 후속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병원 진료 동행 및 심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2조)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제적 지원

▪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s://kcvc.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쉼터(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 다음의 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 ※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